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2. 기준일 : 2022.03.21

3. 효력발생일 : 2022.03.25

4. 정정사유

- ① 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(2등급→1등급)
- ②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- ③ 기업공시서식 변경 반영
- ④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⑤ 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 ① 생략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추가>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생략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 ① 좌동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좌동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8조(신탁금의 납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 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 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③ 생략	제8조(신탁금의 납입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 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 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가투자 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 ③ 좌동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 한다. ② 생략	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. ② 좌동
자본시장법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

개정사항 반영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</p> <p>1~16. 생략</p> <p>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"수익증권고객계좌부"라 한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한다.</p> <p>1. 고객의 성명 및 주소</p> <p>2. 수익증권의 수</p> <p>③~⑤ 생략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~16. 좌동</p> <p>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"수익증권고객계좌부"라 한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한다.</p> <p>1. 고객의 성명 및 주소</p> <p>2.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</p> <p>③~⑤ 좌동</p>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~③ 생략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·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, 자산배분명세, 취득·처분 등의 결과,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.</p>	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 <p>①~③ 좌동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·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, 자산배분명세, 취득·처분 등의 결과,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.</p>
오기정정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내지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~5. 생략</p>	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 <p>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내지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~5. 좌동</p>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<p>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~6. 생략</p> <p>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⑤ 생략</p>	<p>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</p> <p>① 좌동</p> <p>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좌동</p> <p>④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~6. 좌동</p> <p>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</p> <p>⑤ 좌동</p>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생략</p>	<p>제25조(판매가격)</p> <p>① 좌동</p>

사항 반영	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 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 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(토요일은 제외한다.)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생략 ④ 생략	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 개장일이 아닌 경우 (토요일은 제외한다.)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 (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좌동 ④ 좌동
오기정정	제28조(환매연기) ①~⑥ 생략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~2. 생략	제28조(환매연기) ①~⑥ 좌동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~2. 좌동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당해종류 수익증권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당해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~③ 생략	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당해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당해종류 수익증권상당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당해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~③ 좌동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 생략	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재무상태표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 좌동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	제37조(수익자총회) ①~⑤ 생략	제37조(수익자총회) ①~⑤ 좌동

<p>사항 반영</p>	<p>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~3 생략</p> <p>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</p> <p>⑦~⑩ 생략</p>	<p>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"간주의결권행사"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~3 좌동</p> <p>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</p> <p>⑦~⑩ 좌동</p>
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	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p> <p>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②~④ 생략</p>	<p>제38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</p> <p>①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1. 좌동</p> <p>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</p> <p>②~④ 좌동</p>
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	<p>제39조(보수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</p> <p>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</p> <p>3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 <p>③ 생략</p>	<p>제39조(보수)</p> <p>① 좌동</p> <p>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</p> <p>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</p> <p>3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 <p>③ 좌동</p>
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④ 생략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, 변경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 :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시행일 전일까지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, 사업성평가, 금융자문</p>	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 <p>①~④ 좌동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, 변경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 :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시행일 전일까지 제39조제3항에 따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, 사업성평가, 금융자문</p>

	등) 2. 생략	등) 2. 좌동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 생략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④생략	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~② 좌동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 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 별통지하여야 한다. ④좌동
오기 정정	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~② 생략 ③다만,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법시행령 제223조 제3 <u>항</u>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.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 할 것 3.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, 투자전략 및 투 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생략	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 ①~② 좌동 ③다만,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 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법시행령 제223조 제3 <u>호</u>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.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 일할 것 3.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, 투자전략 및 투 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 좌동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생략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~5. 생략 ③~⑨ 생략	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좌동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 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좌동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 및 그 사 유를 포함한다) 3~5. 좌동 ③~⑨ 좌동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업공시서 식 변경 반영	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.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.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 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간이투 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

	<추가>	<p>습니다.</p> <p>5.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</p>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[요약정보]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[요약정보]	매입·환매방법 제X영업일	매입·환매방법 X영업일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 [요약정보]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3770-1300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2118-0500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연락처 : 02-3770-1300	제2부 4. 집합투자업자 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37층 연락처 : 02-2118-0500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, -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<삭제>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*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)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○자산총액의 100%까지 :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○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	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*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)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○자산총액의 100%까지 :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○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

	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, <추가>	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삭제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삭제>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
결산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	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: 2등급 수익률 변동성 : 24.95%	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: 1등급 수익률 변동성 : 25.75%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제 X 영업일	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X 영업일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, 제3부 1. 재무정보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대차대조표	제2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, 제3부 1. 재무정보,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, 회사 연혁 업데이트	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및 연락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(02-3770-1300 www.wooriam.kr) 가. 회사개요 <신설>	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주소 및 연락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(02-2118-0500 www.wooriam.kr) 가. 회사개요 2021.10.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(주)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< 신설 >	제 4 부 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
채권평가회사 사명변경	제4부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채권평가	제4부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KIS자산평가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	제 5부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6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<추가>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	제 5부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6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	제 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	제 5부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

	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	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제 5부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)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매입·환매방법 제X영업일	매입·환매방법 X영업일
집합투자업자 주소 변경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3770-1300	집합투자업자 대표번호 : 02-2118-0500